

고 시

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-6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2월 19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1. 대 상 : 케이디씨(주)
2. 처 분 내 용 :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 -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를 위반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한 선불통화 보증보험증권을 갱신하지 아니함
4. 근 거 법 령 :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, 제32조 및 제92조
5. 처 분 일 자 : 2013. 2. 19.